

행 정 절 차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1. 개정이유

복수 청문주재자 제도 도입, 인·허가의제 처분기준 통합공표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, 온라인공청회 단독 개최가 가능토록 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「행정절차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복수 청문주재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공청회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복수 청문주재자의 구성 및 대표 청문주재자 선정(제15조의2 신설)

- 1) 행정청이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선정할 경우 2분의 1 이상을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
- 2) 행정청은 이해관계 중립성,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, 대표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진행
- 3) 청문주재자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청문주재자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함

나. 온라인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절차 마련(제20조의2 개정)

- 1) 온라인공청회 개최시 현장공청회와 동일하게 14일전까지 알리도록 함
- 2) 온라인공청회 공고내용에 발표자에 관한 사항, 발표자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, 참여방법을 추가하여 현장공청회와 동일·유사하게 운영토록 함

다. 인·허가의제 처분기준 통합공표 방법 추가(제12조 개정)

행정청이 인·허가의제 처분기준을 통합 공표시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
게시판·관보·공보·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 인터넷 홈페이지에
공고토록함

라.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 방법, 참여기법 등 추가(제25조의 2 개정)

- 1) 참여 방법으로 정책의 이해관계인, 일반인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
민관협의체 방식 추가
- 2) 참여 기법으로 일반인, 전문가 등의 심의 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
시키는 정책숙의 기법 추가
- 3) 행정청이 국민참여제도 운영시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등
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법 제20조제1항”을 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2 중 “그 처분이 인·허가 등의 취소, 신분·자격의 박탈,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, 그 밖에 당사자”를 “당사자”로 한다.

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,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) ① 행정청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, 전체 청문 주재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청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중에서 이들을 대표하는 청문 주재자(이하 “대표 주재자”라 한다)를 이해관계의 중립성,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대표 주재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여야 한다.

④ 대표 주재자는 청문 주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청문조서 및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대표로 작성하여야 하며, 청문 주재자 전원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⑤ 청문 주재자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4항 중 “제17조제1항·제2항·제6항 및 제7항”을 “제17조제1항·제2항·제6항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2의 제목 “(전자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)”을 “(온라인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“전자공청회””를 ““온라인공청회””로, “전자공청회 개최”를 “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전자공청회를”을 “온라인공청회를”로, ““전자공청회주소””를 ““온라인공청회주소”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0조의2제4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발표자에 관한 사항

5.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

6. 참여 방법

제20조의2제7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전자공청회”를 “온라인공청회”로 한다.

제20조의3의 제목 “(전자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)”를 “(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”을 “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는”으로, “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”을 “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”으로, “전자공청회주소”를 “온라인공청회주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전자공청회를”을 “온라인공청회를”로 한다.

제22조의 제목 “(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알림)”을 “(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전자공청회에서”를 “온라인공청회에서”로, “전자공청회주소”를 “온라인공청회주소”로 한다.

제22조의2의 제목 “(전자공청회 운영 지원)”을 “(온라인공청회 운영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전자공청회의”를 “온라인공청회의”로, “전자공청회주소”를 “온라인공청회주소”로 한다.

제24조의5 중 “제7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제25조의2의 제목 “(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)”을 “(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“전자적”을 “온라인”으로 한다.

제25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정책의 이해관계인, 일반인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
- 6. 자원봉사활동 또는 사회공헌활동

제25조의2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일반인,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,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

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을 공표할 때에는 참여의 자격, 기

간, 창구, 내용, 의견반영 결과통지 등 참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,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표 사항을 널리 알려야 한다.

제25조의3을 삭제한다.

제26조의 제목 “(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)”을 “(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전자적 정책토론(이하 “전자적”을 “온라인 정책토론(이하 “온라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, 제3항 및 제6항 중 “전자적”을 각각 “온라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영 제12조의 개정규정(법 제20조제2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.)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처분기준의 공표) 행정청은 <u>법 제20조제1항</u> 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당사자등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·관보·공보·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	제12조(처분기준의 공표) ----- -- <u>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</u>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3조의2(청문실시 노력) 행정청이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에 대한 청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<u>그 처분이 인·허가 등의 취소, 신분·자격의 박탈,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, 그 밖에 당사자</u> 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	제13조의2(청문실시 노력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당사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설>	제15조의2(2명 이상의 청문 주제자) ① 행정청은 <u>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청문 주제자를 선정하는 경우, 전체 청문 주제자 수의 2분의 1 이상을</u>

제15조의2 (생략)

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청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중에서 이들을 대표하는 청문 주재자(이하 “대표 주재자”라 한다)를 이해관계의 중립성,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대표 주재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여야 한다.

④ 대표 주재자는 청문 주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청문조서 및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대표로 작성하여야 하며, 청문 주재자 전원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⑤ 청문 주재자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3 (현행 제15조의2와 같

제20조(문서의 열람등) ① ~ ③ (생략) ④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복사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·제2항·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 제20조의2(전자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) 행정청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(이하 “전자공청회”라 한다)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전자공청회 개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, 관보·공보·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. 1. (생략) 2. 실시기간 및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인터넷 주소(이하 “전자공청회주소”라 한다) 3. (생략) <신설>	음) 제20조(문서의 열람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----- ----- ----- ----- 제17조제1항·제2항·제6항----- -----. 제20조의2(온라인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) ----- ----- ----- “온라인공청회”----- -----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온라인공청회를 ----- ----- “온라인공청회주소”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발표자에 관한 사항
--	--

<신 설>

<신 설>

4. 그 밖에 전자공청회 개최와
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20조의3(전자공청회 의제 등의
게시) ① 전자공청회를 개최하
는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
하는 기간 동안 해당 전자공청
회주소에 제20조의2 각 호의 사
항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
하는 기간 동안 서면으로 제출
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
견을 해당 전자공청회주소에 게
시할 수 있다.

제22조(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
과의 알림) ① (생 략)
② 행정청은 전자공청회에서 제
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
전자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
한다.

제22조의2(전자공청회 운영 지원)
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공청회
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
전자공청회주소를 마련하여 행
정청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

5.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

6. 참여 방법

7. ----- 온라인공청회 -----

제20조의3(온라인공청회 의제 등
의 게시) ① 온라인공청회를 개
최하는 -- 온라인공청회를 실
시하는 ----- 온라인공
청회주소-----
-----.

② ----- 온라인공청회를 --

-----.

제22조(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
결과의 알림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 온라인공청회에서 -

온라인공청회주소-----
---.

제22조의2(온라인공청회 운영 지
원) ----- 온라인공청회
의 -----
온라인공청회주소-----

원을 할 수 있다.

제24조의5(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) 행정예고된 내용의 복사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.

제25조의2(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)

① 행정청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법 제53조에 따른 전자적 정책토론

3. 4. (생략)

5. 자원봉사활동 또는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한 협력의 기회 제공

<신설>

6. (생략)

② 행정청은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

-----.

제24조의5(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) -----

----- 제6항-----
-----.

제25조의2(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) ①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온라인 -----

3. 4. (현행과 같음)

5. 정책의 이해관계인, 일반인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

6. 자원봉사활동 또는 사회공헌 활동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② -----

여 다음 각 호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<신설>

3. (생략)

③ (생략)

<신설>

④ ~ ⑥ (생략)

제25조의3(국민참여 확대의 지원)

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컨설팅, 교육, 포상,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6조(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)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일반인,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,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 방법을 공표할 때에는 참여의 자격, 기간, 창구, 내용, 의견 반영 결과통지 등 참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,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표 사항을 널리 알려야 한다.

⑤ ~ ⑦ (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)

<삭제>

제26조(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)

① 행정청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정책토론(이하 “전자적 정책토론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는 경우 토론 참여자 간의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토론 과제에 대하여 반복하여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행정청은 전자적 정책토론을 실시할 때에는 토론 개최계획, 토론 과제 및 토론 결과 등을 단계별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전자적 정책토론에 참여하는 행정청과 그 밖의 참여자는 합리적인 토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·⑤ (생략)

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① -----
--- 온라인 정책토론(이하 “온라인” -----

-----.

② ----- 온라인 -----

-----.

③ 온라인 -----
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온라인 -----

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406